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도 도입 등〉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95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도 도입	2
2.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별도 지원근거 마련	9
IV . 입법의 재정영향	1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7. 15.
3. 회 부 일 : 2026.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해 발생 이후의 지원 방식에 중심을 두고 있어 선제적인 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 지원 체계상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피해 농가의 경우 적절한 보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이에 따른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및 제4조제10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도 도입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결과를 기초로 농업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 발생 시의 임업용 시설, 산림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5.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현행	개정안
8.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9.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3(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및 위험지역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 내의 농업재해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농업재해 예방·

현행	개정안
	<u>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8월 14일 공포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 예측과 피해저감 등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결과를 기초로 농업재해 위험지역의 재해예방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폭염 등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농업재해의 발생 양상도 지역별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농업재해 위험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지역의 재해 예방시설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은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별 농업재해의 발생 가능성과 예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제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지역별 재해위험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재해예방시설의 정비 등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른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는 현행 기후영향평가등과 평가 대상 및 기능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¹⁾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

1) 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기후영향평가등의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 농작물 재배 및 축산의 적지·생산성 변화, 돌발·외래 병해충 및 잡초의 이상 발생·피해, 농업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측·실험·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를 활용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농촌 분야 가.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삭제 <2015. 12. 23.>
 ②~⑤ (생략)

이와 같이 현행 기후영향평가등을 통해 농업재해와 관련된 기상·기후 변화와 농작물·축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그 결과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농업재해 위험도평가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하는 것이 기존 평가체계와의 중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에 이미 재해발생 지역의 현황 및 피해 원인 등을 조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3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위험지역 실태조사는 재해 발생 이전에 위험지역의 재해 예방시설 등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현행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으나, 현행 실태조사를 통해 축적된 지역별 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등을 토대로 재해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가

능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별도의 위험지역 실태조사 제도를 추가하기보다는 현행 재해발생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험지역의 파악과 재해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중복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임.

한편, 농식품부는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3(기본계획의 작성), 제3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발생 실태조사)에서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추진 가능하므로 입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2.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별도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은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⑨ (생략) 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⑪ (생략)	법률 제21022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u>-----.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방법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u> ⑪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 보조 및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보조 및 지원의 기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²⁾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 및 지원의 대상·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³⁾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시·군·구의 피해금액이 재정력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49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57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군·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군·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군·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국고에서 재난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 등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재해의 경우에도 농작물·가축 및 농업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영농 재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피해농가의 생활안정과 농업생산기반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농업재해에 대한 현행 지원체계는 피해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정부가 각각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업재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주체와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시·군별 피해규모가 재정력지수에 따라 26억원 이상부터 5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이에 미달하더라도 시·군별 농업피해가 10~50ha 이상이거나 시설·가축 등의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피해와

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7. (생략)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재난지수 300 미만(지원금액 30만원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음⁴⁾.

[농업재해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기준]

지원 주체	지원기준	근거규정
행정안전부(중앙대책본부)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 *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군은 26억원 이상, 0.6 이상은 57억원 이상 피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행안부 지원기준 미만 피해이면 시군별 10~50ha(시설·가축 등은 3억원) 이상 피해 시	농어업재해대책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지방자치단체	① 행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 피해에 대한 지원 ② 재난지수 300미만(금액 30만원)의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 지원	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재난지수 300미만(금액 30만원)의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 지원 규정 포함 ② 농어업재해대책 시행규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①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에 대해서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별표 3을 준용하되, 별표 1 및 별표 3 중 국고는 지방비로 본다.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복구 비용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기준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재난 중 해당 시·군·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8호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국고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재해에 대하여 공동부령으로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경우 현행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현행 지원체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는 재난안전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하여 현재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⁵⁾

문 의 처
02)6788-5415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